

대학 정기감사 중 서류 제출 요구 - 거부가 사건 배경

<감사행정원>

<혜정박물관>

혜정박물관 폭언 → 노조 성명서 → 박물관 반박성명 이어져

논란 가운데 선 혜정박물관

이승연 leesy0317@knu.ac.kr
최승욱 dotori14@knu.ac.kr

혜정박물관 김혜정 관장의 '폭언' 논란이 노동조합과 혜정박물관의 3번에 걸친 성명서전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 가운데 폭언의 '피해자'이자 '원인'이기도 했던 감사행정원 측은 혜정박물관에 대한 감사를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그 과정에 관심이 모아진다.

김 관장의 폭언 사실이 대학 구성원에 알려진 것은 지난 3월 27일 노동조합의 성명서를 통해서다. 노동조합은 이메일과 대자보를 통해 혜정박물관 김혜정 관장이 3월 24일 국제캠퍼스 감사행정원을 찾아가 직원을 상대로 폭언을 했다며 ▲김 관장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해당 직원을 만나 사과할 것 ▲학교 당국은 김 관장에 대해 징계 조치 할 것 ▲윤리규정을 강화하고 구성원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를 다음 노사협의회까지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노조·직원 상대 폭언 사과해라

박물관, 노조가 관장 명예 실추시켜

혜정박물관 측도 반박 성명서를 냈다. 혜정박물관 직원들은 지난 3월 28일 이메일을 통해 반박 성명서를 내고 노조가 박물관 관장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에 대해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조합원 권익향상이라는 명분으로 공표되는 노조의 일방적인 주장이 또 다른 권력으로 작용해 비조합원 직원의 권익을 침해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재발방지책을 요구했다.

혜정박물관 측은 4월 1일 재차 김혜정 관장 명의의 '입장문'을 전체 부서에 이메일로 배포했다. 김혜정 관장은 '입장문'에서 노조의 성명서에 '분노를 감출 수 없다'며 본인의 24일 감사원 방문은 감사원 측이 서류철을 '탈취'해 간 것에 대한 항의의 표시였다며 이런 배경에 대한 설명이 없는 노조의 성명서는 '일방적'이라고 비판하면서 오히려 본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해 사과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김 관장은 입장서 말미에서 본인은 대학 설립자로부터 '특별주대'를 받았다면 '정책적인 주대가 행정보다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한 김 관장은 본인의 이런 노고를 알아주지 않는 '경희대학교에서 칠수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김혜정 관장은 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 서도 입장문 내용과 유사하게 "사무실 항의방문은 감사행정원이 서류를 탈취해 간기 때문"이라고 말하며 직원에게 폭언을 한 것은 "직원 한 사람에 대해 한 것이 아니라 '감사행정원'에 대한 항의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감사행정원의 부당 행위에 항의



국제캠 중앙도서관 4층에 위치한 혜정박물관과 노동조합 간의 성명서전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하는 중에 흥분상태에서 거친 말을 한 것은 유감"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송혜경 노동조합위원장은 "통상적으로 특정 부서를 상대로 항의를 할 때에는 '직원'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관장'에게 하는 것"이라며 "직원에게 고성과 폭언을 한 것에 대한 항의는 전체 조합원을 대표하는 노조위원장으로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정상적 감사업무 지역

박물관, 일방적인 문서 탈취

혜정박물관과 노동조합 사이 날선 성명서전의 발단은 지난 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감사행정원 측은 대학 정기감사를 위해 혜정박물관 측을 상대로 2월 10일과 22일, 27일 등 총 세 차례에 걸쳐 메일과 공문을 보내 감사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했다. 당시 감사행정원이 혜정박물관에 요구했던 서류는 구입유물철이다. 이에 대해 박물관 측은 3월 2일자 회신 공문을 통해 ▲수장고를

관리하는 학예사의 미비 ▲유물 구입 건에 대한 부총장 결재 완료를 이유로 서류 제출 요구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혜정박물관 김혜정 관장은 "학교에서 행정직원과 학예사 지원이 없어 인력부족 상태"라며 "혜정박물관에 있는 인원 중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인원이 적기 때문에 출장 당시 서류제출 요구를 전달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감사행정원은 혜정박물관의 서류제출 거부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감사행정원 조성인 계장은 "당시 요구했던 서류는 누구나 보고 이해하고 만들 수 있는 것이고, 부총장 혹은 총장 결재 서류도 모두 감사 범위"라며 유물구입 건이 부총장 결재 완료 상태이기 때문에 제출할 수 없다는 혜정박물관 측의 답변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실제로 전부서를 상대로 하는 대학 감사에서는 결재 수준에 상관없이 학교 조직에 편제되어 있는 한 생산되는 모든 문서는 감사 대상이다. 이를테면 부서 특성에 따라 감사에서 제외되는 '성역'은 없다는

의미다.

혜정박물관 측이 계속해서 서류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자, 지난달 13일 감사행정원은 혜정박물관을 직접 방문했고, 23일 두 번째로 방문한 자리에서 그간 요구해온 구입유물철 2권과 현장에서 추가로 필요하다고 결정한 기탁유물철 1권을 박물관 현장에서 이관 조치했다. 감사규정 제2장 감사 계획 및 실시 제13조(감사대상부서의 의무)

'감사 대상 부서의 장과 소속 교직원은 감사팀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자료제출, 출석 및 답변을 하는 감사수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에 따라 감사행정원은 이관 과정이 '절차상 문제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감사원의 종이서류 이관

감사규정상 "적법한 절차"

감사행정원 조성인 계장은 "지금은 문서 결재를 그룹웨어라는 전자 문서로 한다. 모든 문서가 전자파일의 형태로 웹에서 관리되고, 감사부서는 그것을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고 있다"며 "다만 이번에 요구한 문서는 그룹웨어 도입 전 '종이서류형 문서'였다. 때문에 전자파일 형태의 문서를 감사하듯이 요청했을 뿐이다. (전자파일 형태의 문서를 열람할 때 해당 부서 부서장의 사전 승인을 득할 필요가 없듯이) 부서장이 있을 때 가져가겠다고 하는 건 예의상,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이다. 반드시 부서장의 허가가 필요한 부분은 아니다"고 말했다.

감사행정원의 서류 이관 조치에 반발한 혜정박물관 측은 즉시 '이관서류 반환요청'을 했다. 양측은 이관 조치 다음날인 24일 박물관에서 자료 이관 결재 후 자료 개봉, 이관'을 한다는 협의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감사행정원은 다음날인 24일 협의안

을 이행하지 않았다. 당시 상황에 대해 감사행정원 측은 "모든 부서에 감사업무 수행을 위한 서류요청을 해야 하는데, 이런식의 서류반환 요구에 응한다면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려 이행을 거부했다"고 해명했다.

박물관, 가져간 서류 돌려 달라

감사원, 감사상 중요 서류 좀더 보관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김혜정 관장이 지난 3월 24일 감사행정원에서 떠나고, 당시 감사행정원 유영학 원장과 전 혜정박물관 학예사였던 오일환(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가 직접 박물관 시설 현황을 점검했다. 김 관장은 "가져간 서류는 검토 후 1-2일 내내 반환하겠다고 감사행정원장이 직접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반환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감사행정원 측은 "당시 유영학 원장의 말은 서류를 검토해보고, 별다른 필요성이 없으면 반환하겠다는 뜻"이었다며 "감사 상 중요 서류인 것이라는 결론을 내려 좀더 보관하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감사행정원은 이 같은 결정을 내리며 '원본 대조필이 된 사본을 남기고 원본을 박물관에 반환'하거나 '원본은 보관되어 사본을 반환'할 것을 박물관에 제안했지만, 아직 협의는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와중에 지난 1일 박물관은 감사행정원에 기탁유물목록 1권의 반환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개인소장물인 기탁유물은 학교의 관할이 아니라는 것이다. 기탁유물은 개인 소유이지만, 학교에서 보관하고 있는 유물은 의미한다. 반면 감사행정원은 학교에서 보관하고 있는 이상 기탁유물도 감사 대상이라는 입장이다.

감사행정원 조 계장은 "학교에 보관되는 이상 분실과 도난의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며 "기탁유물에 대한 책임도 학교가지고 있기 때문에 감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관장은 이에 대해 "기탁유물에 대해 학교가 어떠한 지원도 해주지 않은 자료임에 불구하고, 박물관 전시목적으로 가져다 둔 것"이라며 기탁유물목록을 반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결국 3차례의 성명서를 통해 드러난 쟁점은 ▲감사행정원의 서류 이관 과정이 적법했는가 ▲감사를 수행하기 위한 서류제출 요구에 해당부서가 거부하는 것이 적법한가로 입증된다. 또한 ▲학교의 기관장이 행정직원을 상대로 '폭언'을 하는 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 역시 직원 사회의 관심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이런 쟁점의 해결 과정과는 별개로 감사행정원 측은 예정대로 감사 절차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감사행정원 조성인 계장은 "이런 사건이 불거졌다고 감사를 멈출 수는 없다"며 "예정대로 감사 절차를 진행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2015년도 대학직장 예비군 향방기본훈련 안내

1. 훈련대상 : 전역 1~6년차 예비군 전원(3,000여명)
2. 장소 : 징3, 일정

훈련명	훈련일자	대상
향방기본 훈련 (8시간)	4. 27(월)	교직원,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의학/치의학/법학), 특수대학원(경영/공공/관광/교육/법무/언론정보/평화복지), 간호과학대학, 법과대학, 약학대학, 의과대학, 음악대학, 자율전공학과,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호텔관광대학
	4. 28(화)	경영대학, 무용학부, 문과대학, 미술대학, 생활과학대학
	4. 30(목)	정경대학, 이과대학

* 교육훈련 소집통지서는 별도 발송하지 않으며 휴대폰 문자 1~2회, E-mail, 대학주보, 교내방송, 학교 / 단과대학 홈페이지, 각 행정실 게시판 등에 공고 및 공지사항으로 대신함.

4. 이동방법

가. 단체이동

1) 이동수단 : 대형 전세버스 이용 출발 및 복귀

2) 출발장소 / 시간 : 청운관 앞 도로 / 당일 07시50분 출발

나. 개별이동

1) 시내버스 : 30번(청량리/휘경동), 23번 / 1~4번(천호동), 93번(강변역)

2) 전철 : 중앙선 노동역 2번 출구 버스종강차로 정류장에서 위의 버스로 환승

3) 개인차량 : 약도참조

5. 참고사항

가. 간부 출신 7년차 이상, 병 출신 7~8년차, 당해년도 전역자는 미부과

나. 학과·학년 구분 없이 동시실시 및 성씨별(가나다 순) 학급편성

다. 복정전투복, 전투모, 군화, 요대, 비를, 고무링, 불량자 결석처리

라. 신분증(학생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미소지자 결석처리

마. 지각자 귀기조차—반드시 08시 50분까지 부대정문 도착

바. 교육일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부대 1일 수용인원, 버스대수 등의 사유로 일정변경 절대불가

사. 결식 및 지각으로 인하여 고발/벌금형 등의 불이익처분에 우의

아. 훈련편성 예비군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누락된 예비군은 연대본부로

전화 또는 방문요망

자. 기초생활수급권자는 사회복지 급여서비스 및 급여 통지서 서류 제출시 훈련연제됨

차. 훈련일 기준 휴학 등으로 본인 학적 중이 아닌 학생은 훈련참석 불가

카. 2014년 1월 1일부 수업연한 초과자(출업유예자) 학생훈련 제외, 병무청(동원),

지역 일반훈련 대상

타. 중식은 학교예산으로 지원되지 않으며, 부대에서 지급되는 예비군훈련비(교통비, 중식비)로 사용

6. 기타

가. 기타 문의사항은 청운관 1층 대학생활지원센터

예비군연대본부(☎961-0148~9)로 문의

나. 훈련, 학사 등 정확한 정보 수신을 위해 인터넷 예비군 홈페이지

(포털사이트 '예비군' 검색)에서 현재 사용 중인 E-mail과 휴대폰번호로 반드시

서울캠퍼스 예비군연대